

# 프랑스의 산업의 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차철환

## 1. 산업의 계약

프랑스의 산업보건제도에에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산업의에게 산업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또한 각 기업이 소속 산업의국(자립산업의국; Services Medicaux du Travail Autonome, SMTA)을 둘것인지 아니면 여러 기업이 공동의 산업의국(기업간 산업의국; Services Medicaux du Travail Intre-entreprises, SMTI)을 둘 것인지는 산업의가 기업이나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들면 사무원 20명당 1시간, 현장 근로자 15명당 1시간이 산정되는데, 그 총 근무시간이 169시간 이상인 기업이나 사업장에는 SMTA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의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총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기업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SMTI를 두거나 그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 169시간 미만의 기업에서는 SMTA를 두고 전임 산업의를 고용하든지 SMTI에 소속하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SMTA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노동고용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하며, 국장은 지방노동고용감독

관의 의견을 얻은 후 승인 결정을 한다. SMTA 설치, 관리, 운영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항상 종업원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위원회의 감독하에 두고, 기업위원회는 산업의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SMTI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노동고용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SMTI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적인 독립성을 지니며 관련기업이 직접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SMTI는 소속 기업의 기업위원회 대표자로 구성되는 기업간위원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감독하에 SMTI 회장이 관리한다. SMTA 설치의무가 없는 기업이 공동으로 SMTI를 설치하거나 또는 가입할 경우, 사용자는 SMTI의 선택에 있어서 기업간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만 한다. 또한 기업간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SMTI를 탈퇴할 수 없다. SMTI 활동은 지방노동고용국장에 의해 승인된 의료지역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이 의료지역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로 규정되는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즉 한개의 SMTI는 Fulltime환산으로 6인(시간수;  $169h \times 6 = 1,014h$ )을 초과하여 산업의를 둘 수 없다. 이와같은 제한에 따라 SMTI간의 과도한 영리경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



할 수 있다.

## 2. 산업의의 실태와 활동내용

산업의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의사시험에 합격한 후 4년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이거나 구제도의 CES 취득자이어야 한다. 1993년 현재 불란서에 등록되어 있는 산업의의 수는 약 6,300명(SMTA;1,136명, SMTI;4,800명)이다.

산업의의 주된 업무는 건강진단, 노동자의 적성판정, 직장순시 등이다. 그 중에서도 건강진단이 산업의의 직무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건진에는 취업시 건진, 정기건진, 특수건진, 복직건진 등이다. 취업시 건진은 적정배치를 목적으로 감염증 유무, 취업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의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정기건진은 최저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건진에 대해서는 산업의의 판단에 의해 기간마다 특수건진을 받도록 되어있다.

각종의 건진후에 산업의의는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적성표를 작성해야하며, 이 적성표에는 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는 가능한 직종이 기재되는데, 의료정보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규정에 의해 배치될 수 없는 직무에 대한 의학적 이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산업의의는 각 근로자의 연령, 신체적 저항성, 건강상태에 따라서 배치여부에 대한 조치를 사용주에게 조언할 수 있다. 사용주는 산업의의의 조언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의의는 각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보완

하기 위해 작업장의 노동조건, 안전조건, 위생조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직장순시를 해야한다. 사용주는 산업의의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산업의의가 전체 근무시간의 1/3을 작업장에서의 활동에 배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한다.

산업의의는 산업보건이나 안전위생에 관해서 그 기업의 기업위원회, 감독위원회,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산업의의는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임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구급치료와 예방접종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은 낼 수가 없으며, 또한 SMTA 산업의의는 개업의를 겸임하는 일이 금해져 있으며, SMTI에 대해서도 겸임을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SMTI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산업의의의 부족때문에 그 지역의 임상의를 part time 산업의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3. 결 론

프랑스의 산업의의는 전문의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산업의 중에는 보다 임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며, 현재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보건제도에서는 배워야할 장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의료구역의 설정이나 직무시간수에 상응하는 산업의의의 배치 등은 대단히 참고될 수 있는 점이다.